

■ 화제의 뉴스 ■

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길 열릴까

현직 변호사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공식 진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공인중개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되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간 의견 충돌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즉 대법원(2003 두 14888 판결)은 (i) 공인중개사법이 변리사법이나 세무사법처럼 변호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고 (ii) 부동산 중개행위가 변호사법상의 '일반 법률사무'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, (iii)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밀유지의무, 이익충돌회피의무 등과도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.

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1년 유권해석을 통해 부동산중개업법(공인중개사법의 전신) 등을 종합하면 '알선'은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직무로 정한 '일반법률사무'에 속하는 법률사무 내지 이에 부수된 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부동산중개업이 규정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현직 변호사의 금번 온라인 사이트 개설을 기점으로 이러한 입장 충돌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다시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법률신문 - 변호사,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길 열릴까\(2015. 12. 17.\)](#)